

제325회 정례회  
2013. 12. 20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(금)
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12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(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김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목적으로 충청북도 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, 제3조)
-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(안 제4조)
-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임무(안 제5조, 제6조)
- 원인조사 시기, 현지조사,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 
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- 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청, 경비지원(안 제10조, 제11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: 문홍열)

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지진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충북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지진재해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지진예방정책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지진재해원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해 지역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

구성·운영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- 입법예고('13. 11. 11. ~ 12. 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예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진피해 원인조사”(이하 “원인조사”라 한다)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”(이하 “원인조사단”이라 한다)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충청북도 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말한다.
3.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”(이하 “조사단원”이라 한다)이란 지질·건축·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충청북도 거주자 중 충청북도 지역 본부장이 단원으로 임명하여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한다.

제4조(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)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.

1. 규모 5.0 이상의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
2. 규모 5.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·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
3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
4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·협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·관리하여야 하며,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.

② 원인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사단장”이라 한다)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하고,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.

1. 별표 1의 관련분야 학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2. 그 밖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

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한다.

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2.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, 지역, 인원,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장비·인력 등의 증감 사항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의 양식에 따라 지진피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·분석 등이
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- ④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「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발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경비지원)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(수치지도화)비, 비디오 촬영비, 위성사진 분석비, 조사차량 임차비,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진피해 원인조사단 편성기준

분 과	규 정	관련 학·협회	비 고
지진현상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지질학회</li> <li>- 한국지진공학회 등</li> </ul>	※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가동이 필요할 경우, 각 학·협회 별로 편성 기준상 인력이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·관리 (예, 원자력시설 등이 없는 지역인 경우 이 분야 전문가를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)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건축학회 등</li> </ul>	
교통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교통학회 등</li> </ul>	
상·하수도 및 환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상하수도협회 등</li> </ul>	
산업·통신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방재협회</li> <li>- 한국방재학회</li> <li>- 한국통신학회 등</li> </ul>	
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수자원학회 등</li> </ul>	
원자력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원자력학회 등</li> </ul>	
지반·토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조교수 이상 2인 이상</li> <li>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토목학회</li> <li>- 한국지반공학회 등</li> </ul>	

[별지 1]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

### I. 조사 개요

가. 목적

나. 조사기간

다. 조사지역

라. 조사단

### II.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

가. 조사내용(피해발생 현황 등)

나. 원인분석

### III. 현장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

### IV. 최종결과보고 방향

##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

### I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- 마. 주요 조사내용

### II. 충청북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

- 가. 충청북도의 지진현황
- 나. 금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

### III. 현장조사 결과

- 가. 지진피해 총괄
- 나. 현장조사 내용
  - 1) 시설별 피해 내용
  - 2) 지역별 피해 내용
  - 3) 지진 발생 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
- 다.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

### IV. 지진피해 교훈 및 시사점

### V. 국가지진방재정책 개선방향

### VI. 결론

부록 : 화보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지진재해대책법」

- 제20조(지진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·운영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위원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.
- ② 중앙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중앙본부장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및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위원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